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동인권의 날 지정 〉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0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노동인권의 날 지정	2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13일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노동인권의 날 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노동인권 증진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14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4조의2(노동인권의 날) ① 노동자 권리를 위한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한다.</u>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나, 노동인권과 관련된 별도의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노동인권과 관련된 국가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바,¹⁾²⁾ 개정안은 故전태일의 분신항거일인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정안은 노동인권의 날 지정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을 통하여 ‘노동인권’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통해서도 노동인권에 대한 기념행사 추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노동인권의 날을 지정할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경향신문,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하고…온 사회가 전태일 정신 계승해야 ” 김남희 기자, 2025.11.13.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32212005>

2) 매일노동뉴스, “‘모두의 전태일’ 국가기념일 지정 분위기 ‘뜨다’”, 이용준 기자, 2025.11.1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21>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계약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법률인바 특정 사건이나 상징적인 기념일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하고 있는바 동일 취지의 기념일을 근로기준법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